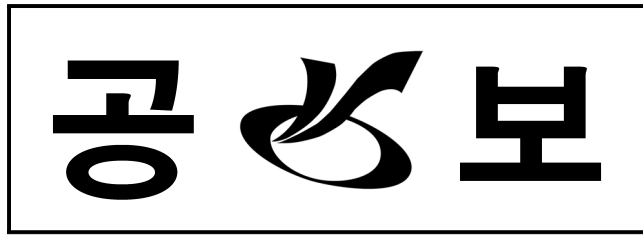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574호

2007년 4월 16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17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39호 인천 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41호 어업 면허(한정) 처분 공고 1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47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52호 신현종합상가 정비사업추진계획 공고 20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17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고시

2007년 4월 3일 제13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이하“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② 위원은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청장, 서구청장, 강화군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등) ① 협의회는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천시에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7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의 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2,5,8,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구성 지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의결사항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친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경비부담 및 지출)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원의 경비는 월 100,000원으로 한다.

③회비는 회의 참석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매월 납부한다.

④회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한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
3. 회원의 경조사비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7조(회계) ①협의회의 경비집행상황은 부회장이 매년 첫 번째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②부회장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군·구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 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조(보칙) 이 규약 이외의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임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약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민선자치단체장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본위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조직』으로의 강화와 행정의 창의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직형태의 변화 및 실무역량 극대화를 위해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직급조정과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 변동없음(775명 ⇒ 775명)

○ 직급간 변동내역

- 5급 : 42 → 47명(증5)

- 6급이하 : 727 → 722명(△5)

※ 직급간 정원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정

○ 추가 소요 인건비 : 106,572천원

나. 행정기구 : 5개부서 신설

(구청홍보실, 교육지원과, 위생행정과, 녹지경관과, 교통민원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비용소요 추계서

개정내용

■ 범규안명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행정기구 : 5개부서 신설
(구청홍보실, 교육지원과, 위생행정과, 녹지경관과, 교통민원과)
- 정 원 :
 - 현 행 : 775명
 - 조 정 : 775명
 - 5급 : 42 → 47명(증5)
 - 6급이하 : 727 → 722명(△5)

비용소요 내역

“ 별 첨 ”

비용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 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 고
		내 역	단 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총계	106,572,820						
1. 인건비	91,193,220						
가. 기본급	61,254,000	○ 구청장(연봉제)	75,936,000				
		○ 부구청장(연봉제)	72,367,000				
		○ 4급(연봉제)	62,045,000				
		○ 5급(26호봉)	2,776,700	5		12	166,602,000
		○ 6급(20호봉)	2,214,900			12	
		○ 7급(14호봉)	1,755,800	-5		12	-105,348,000
		○ 8급(10호봉)	1,390,600			12	
		○ 9급(5호봉)	994,800			12	
		○ 기능6급(22호봉)	2,284,600			12	
		○ 기능7급(20호봉)	1,996,600			12	
		○ 기능8급(18호봉)	1,726,900			12	
		○ 기능9급(15호봉)	1,455,100			12	
		○ 기능10급(19호봉)	1,455,300			12	
나. 상여금	9,800,640	○ 기말수당					폐지
		○ 정근수당	61,254,000		0.08	2	9,800,640 90%평균
다. 정액수당	20,138,580						

구 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 고
		내 역	단 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1)가족수당	0	○ 배우자	30,000		0.78	12	
		○ 존비속	20,000		1.48	12	
2)자녀학비수당	0	○ 중학교	46,500		0.19	4	
		○ 고등학교	355,200		0.15	4	
3)정근수당가산금	3,000,000	○ 25년 이상	130,000	5		12	7,800,000
		○ 20년~25년미만	110,000			12	
		○ 15년~20년미만	80,000	-5		12	-4,800,000
		○ 10년~15년미만	60,000			12	
		○ 5년~10년미만	50,000			12	
4) 정액급식비	0	○ 일반직	130,000			12	
5) 교통보조비	600,000	○ 2급	200,000			12	
		○ 4급~5급	140,000	5		12	8,400,000
		○ 6급~7급, 기능1~7급	130,000	-5		12	-7,800,000
		○ 8급~9급, 기능8~10급	120,000			12	
6) 명절휴가비	6,125,400	○ 명절휴가	61,254,000		0.10		6,125,400
7) 가계지원비	10,413,180	○ 가계지원	61,254,000		0.17		10,413,180
2. 물건비	12,600,000						
가. 직책급여무추진비	6,000,000	○ 4급	350,000			12	
		○ 5급	100,000	5		12	6,000,000
		○ 6급	50,000			12	

구 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 고
		내 역	단 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나. 직급보조비	6,600,000	○ 4급	400,000			12	
		○ 5급	250,000	5		12	15,000,000
		○ 6급	155,000			12	
		○ 7급	140,000	-5		12	-8,400,000
		○ 8급	105,000			12	
		○ 9급	105,000			12	
		○ 기능6급	155,000			12	
		○ 기능7급	140,000			12	
		○ 기능8급	105,000			12	
		○ 기능9급	105,000			12	
		○ 기능10급	95,000			12	
3. 이 전 경 비	2,779,600						
가. 성과상여금	2,779,600	○ 3급(20호봉)	3,229,400		0.80	1	
		○ 4급(20호봉)	2,880,100		0.80	1	
		○ 5급(18호봉)	2,495,900	5	0.80	1	9,983,600
		○ 6급(18호봉)	2,137,600		0.80	1	
		○ 7급(15호봉)	1,801,000	-5	0.80	1	-7,204,000
		○ 8급(12호봉)	1,486,000		0.80	1	
		○ 9급(10호봉)	1,247,100		0.80	1	
		○ 기능6급(18호봉)	2,137,600		0.80	1	

구 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 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 기능7급(15호봉)	1,801,000		0.80	1	
		○ 기능8급(12호봉)	1,486,000		0.80	1	
		○ 기능9급(10호봉)	1,247,100		0.80	1	
		○ 기능10급(9급10호봉)	1,247,100		0.80	1	
		○ 정원경철(10호봉)	1,319,800		0.80	1	

※주: 1) 소요비용 계 중 상여금, 정근수당가산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등은 1인 단가가 아님에 유의
 2) 산출근거별 단가는 매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됨
 3)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39호

인천 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 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제안하고 같은 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개요

- 가. 지구명 : 인천 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
-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 다. 사업규모 : 670,692㎡ (202,884평)
- 라.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 마. 지구지정제안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2. 금곡택지개발예정지구

- 가. 공람기간 : 2007. 4. 11 ~ 2007. 4. 25 (14일)
- 나.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내 공람장소 제출
(공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 제출)

3.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주민설명회

- 가. 공람기간 : 2007. 4. 11 . ~ 2007. 5. 1 (20일)
- 나. 주민 설명회
 - 일시 : 2007. 4. 20(금) , 15:00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032-561-4115)
- 다. 공람기간 및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람장소에 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제출)

3. 공람 장소

- 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 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사무소 ☎ 032)560-4614
- 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동 사무소 ☎ 032)560-4615
- 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 사무소 ☎ 032)560-4616
- 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 사무소 ☎ 032)560-4617
- 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단지사업본부 ☎ 032)260-5143

4. 관계서류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41호

어업면허(한정)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어업면허(한정)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어업면허 처분내역(공고기간 : 2007. 4. 10 ~ 2007. 5. 9)

면허번호	면적 (ha)	양식방법 (어구명칭)	양식물의 종 류	어업권자		어장의 위 치	면허기간	비 고
				주 소	성 명			
서 구 마을어업 제 1 호	15	바닥식	바지락, 가무락, 맛, 낙지, 피조개	인천 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산업 협동조합장 차석교	서구 세어도 지선	2007. 4.10 ~ 2010. 4.09	한정 어업 (신규)
서 구 마을어업 제 2 호	15							
서 구 마을어업 제 3 호	10							

2.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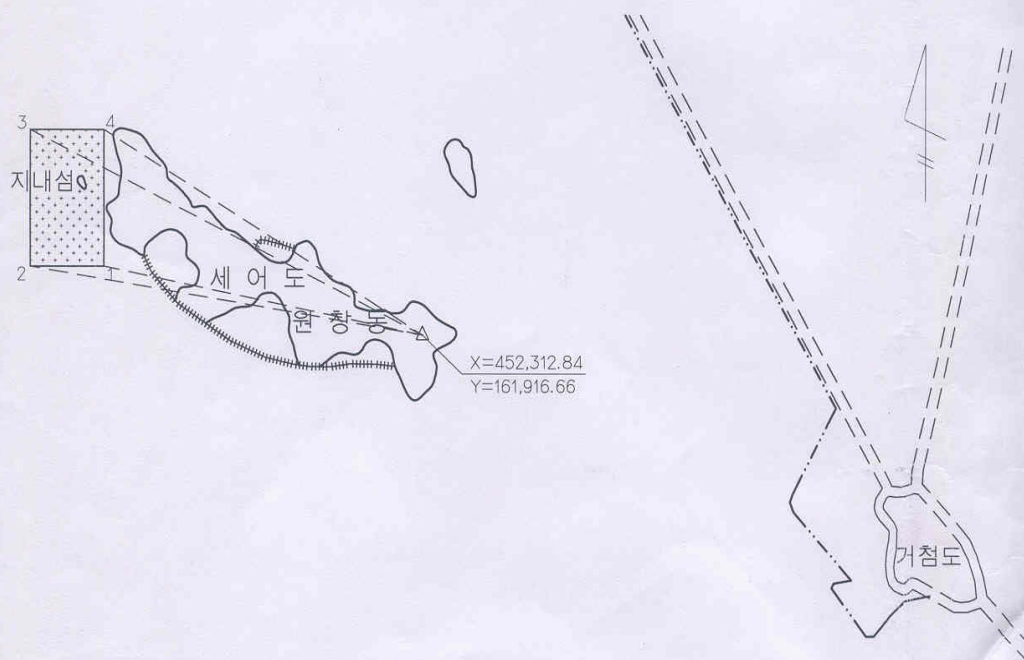
- 가. 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 나. 어업권자는 당해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및 행사료 기타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 다. 어업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라. 어업권자는 당해어장의 지난해 어업생산실적을 매년 어장관리실태조사시 구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어업권은 이전, 분할,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 방수로 건설단, 신공항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운영 및 건설사업(주변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피해포함)으로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보상 및 배상청구를 금합니다.

- 사. 위 기관의 건설사업 등으로 어장폐쇄를 요구하는 경우 조건 없이 어장자진폐쇄(철거).
- 아. 어업면허기간 중 어장 내 신규시설 설치를 금합니다.
- 자. 어업면허기간 중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종패살포를 금합니다.
 - ※ 상기조건을 위반 시 어업면허 취소함.

별 첨 : 조업구역도 각 1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 : 마을어업
2. 어업의 명칭 또는 방법 : 바닥식
3. 수면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지선)
4. 기 점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 (41.33m)
5. 수면 구역 : 아래 도면에서 X,Y 좌표번호 1,2,3,4,1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면적: 150,000m²)



△ 고지삼각점 (X=452,312.84 , Y=161,916.66)

NO	X	Y	번호	거리
1	452,562.53	160,622.58	1-2	300m
2	452,562.53	160,322.58	2-3	500m
3	453,062.53	160,322.58	3-4	300m
4	453,062.53	160,622.58	4-1	500m

다대물도

실무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록제02-2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10
 (주)강남토목건축
 대표이사 조
 화:875-2624·866

기술분야
 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무급
 등록번호 : #60013889호
 조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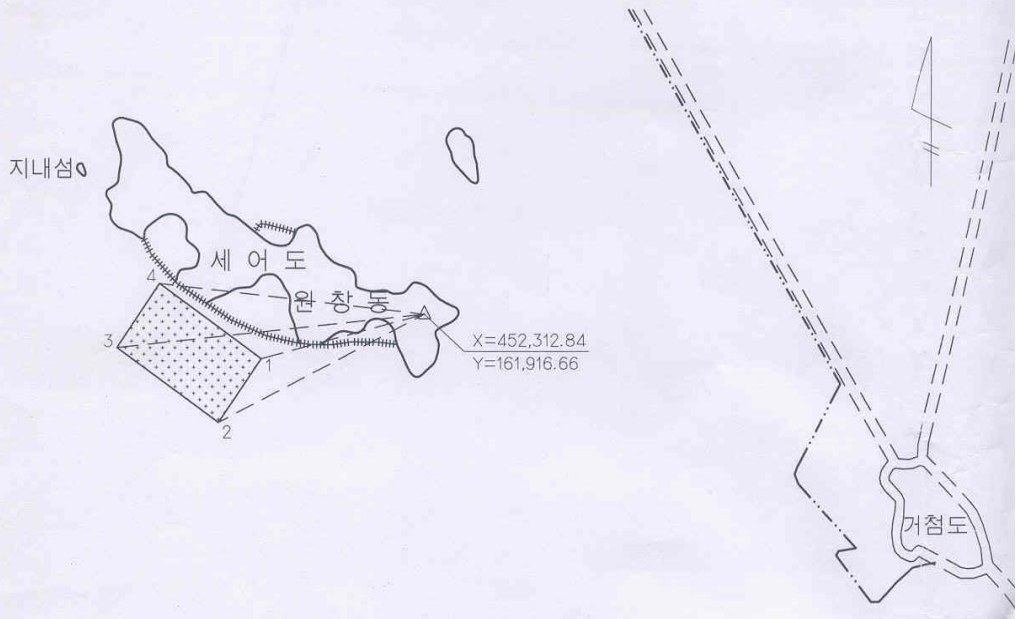
NO	방위각	거리
1	280-55-15.20	L=1,317.95m
2	278-54-8.05	L=1,613.52m
3	295-11-14.70	L=1,761.57m
4	300-05-4.88	L=1,495.55m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서구 마을어업) 면허번호 (한정 제 호)

S=1:20,000

1. 어업의 종류 : 마을어업
2. 어업의 명칭 또는 방법 : 바닥식
3. 수면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지선)
4. 기 점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 (41.33m)
5. 수면 구역 : 아래 도면에서 X,Y 좌표번호 1,2,3,4,1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면적: 150,000m²)



△ 고지삼각점 (X=452,312.84 , Y=161,916.66)

NO	X	Y	번호	거리
1	452,142.38	161,257.76	1-2	300m
2	451,897.07	161,085.07	2-3	500m
3	452,184.89	160,676.22	3-4	300m
4	452,430.20	160,848.91	4-1	500m

다대물도

전설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록제02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3
 (주)강남토목측량설계
 대표이사 조윤
 전화: 875-2624·806

기술 분야
 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록번호: #60013688호
 조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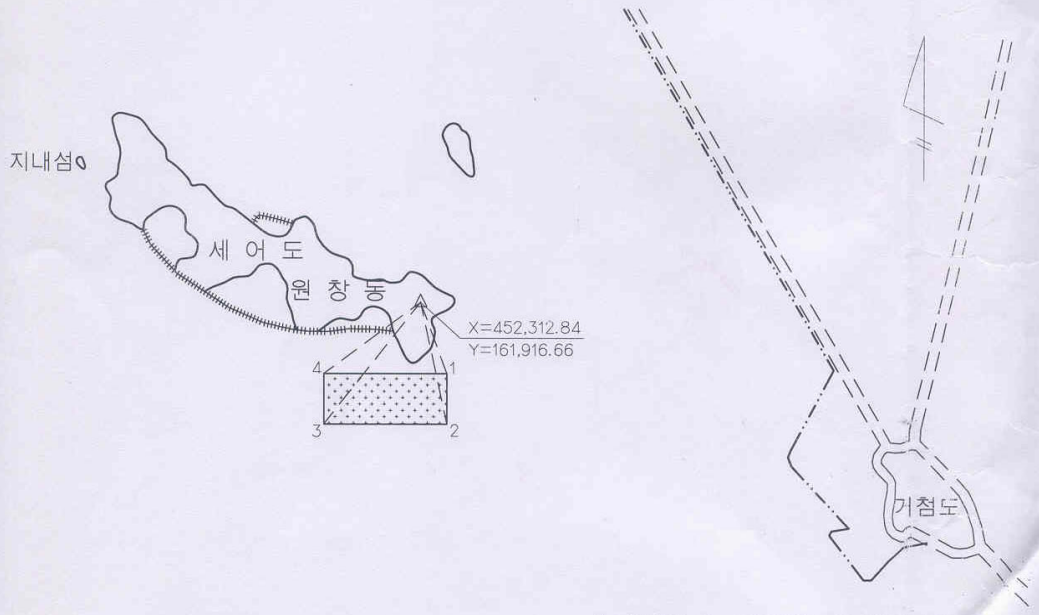
NO	방위각	거리
1	255-29-43.3	L=680.59m
2	243-26-10.7	L=929.73m
3	264-06-38.99	L=1,247.0m
4	276-16-20.6	L=1,074.18m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서구 마을어업) 면허번호 (한정 제 호)

S=1:20,000

- 1. 어업의 종류 : 마을어업
- 2. 어업의 명칭 또는 방법 : 바닥식
- 3. 수면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지선)
- 4. 기점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 (41.33m)
- 5. 수면 구역 : 아래 도면에서 X,Y 좌표번호 1,2,3,4,1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면적: 100,000㎡)



△ 고지삼각점 (X=452,312.84 , Y=161,916.66)

NO	X	Y	번호	거리
1	452,029.81	162,023.43	1-2	200m
2	451,829.81	162,023.43	2-3	500m
3	451,829.81	161,523.43	3-4	200m
4	452,029.81	161,523.43	4-1	500m

다대물도

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록제 0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
강남토목측량공사
대표이사 조윤
875-2624·866-114

토목측량기술사
기술분야
토목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록번호: #600136800
조윤

NO	방위각	거리
1	159-19-53.6	L=302.50m
2	167-32-8.30	L=494.69m
3	219-08-55.31	L=622.85m
4	234-15-19.00	L=484.50m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47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1항에 의하여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 가. 기 간 : 2007년 4월 21일 ~ 5월 10일 (20일간)
-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
- 다.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2. 의견제출

- 가. 기 간 : 2007년 4월 21일 ~ 5월 10일 (20일간)
- 나.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다.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라.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 마. 제출방법 : 서구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52호

신현종합상가 정비사업추진계획 공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현종합상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명 칭 : 신현종합상가 정비사업 추진계획
2. 사업추진계획 개요
 - 가. 정비사업구역 지번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번지
 - 나. 대지면적 : 3,104.7㎡
 - 다. 사업규모
 - 건물연면적 : 25,250.03㎡ (지하 4층, 지상17층)
 - 용 도 : 상가 및 아파트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후 24개월
 - 소요예산 : 35,016백만원
3. 시장정비 추진사유 : 건물의 노후 및 경쟁력 상실
4. 사업추진주체 : 신현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민순)
5. 공람 및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032-560-4433, FAX 032-560-4439)
7.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 신현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등은 아래사항을 서면으로 2007. 4. 30.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추진계획 관련 의견 및 이유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관계도서 및 세부사항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